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133 징계조치처분 취소
원 고 ○○○
○○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 고 ●●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승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미현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일),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 ○학년 ○반에 재학하던 남학생으로서 같은 반 여학생인 △△△과 2013. 11. 중순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초등학교 상담교사 ◎◎◎은 2013. 11. 26. □□□□(원고 및 △△△의 같은 학년 친구)와 상담하던 중 □□□□로부터 원고와 △△△이 교제하면서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다. ◎◎◎은 2013. 11. 27. 원고 및 △△△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와 △△△이 포옹과 키스를 하였고, 원고가 △△△의 가슴을 만지고,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원고와 △△△ 사이에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초등학교 측은 2013. 11. 27. 및 같은 달 28. 원고와 △△△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한 사실을 원고 및 △△△의 부모에게 알렸고, 이를 알게 된 △△△의 부는 2013. 12. 17.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3. 12. 23. 제5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와 △△△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처분을 할 것을 ●●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3. 12. 24. 원고 부모에게 이러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의 부는 2014. 1. 7.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4. 1. 27. 원고에게 위 1, 2, 5호 처분 외에 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일)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한 후 2014. 2. 3. 피고에게 이러한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4. 2. 14.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대로 원고에게 위 3호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하였다.

아.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위 3호 처분을 추가하여 위 1, 2, 3, 5호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1, 14, 16,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 중 1, 2, 5호 처분(이하 '이 사건 1, 2, 5호 처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그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 피고가 위 제5차회의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제5차회의에서 △△△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하였는바, △△△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 5호 처분과 △△△에 대한 처분은 불가분관계이므로 이 사건 1, 2, 5호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3호 처분(이하 '이 사건 3호 처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8차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위 제8차회의에서는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제8차회의는 위법한바, 위법한 제8차회의에서 결정된 이 사건 3호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에 대한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재심절차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고(법 제12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또한,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7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1조 제3항).

2) 한편,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17조의2 제1항), 지역위원회는 재심 결정시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6항).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2, 5호 처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5호 처분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 의결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명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부(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였고,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부에 학부모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김□□, 이□□, 정■□, 김▣▣, 정▣▣, 박▣▣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는 관련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학교장인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심의·의견진술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것은 위 비공개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제5차회의 의결은 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3호 처분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는 후 피고는 이 사건 3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8차회의가 있는 후 이 사건 3호 처분을 한 사실(법 및 시행령은 학교장의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의무(법 제17조 제6항)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교장의 지역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8차회의에서의 의결 역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절차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므로,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별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끝.